

##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제5회 정규직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인천 맞춤형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민간복지 활성화를 지원·육성하며 시민에게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7월 7일

###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분야	직급	인원(명)	직무내용
합 계			16명	
전문직	미추홀 푸르내	전문직 (생활지도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인 케어 및 프로그램 진행</li> <li>· 입소인 개별과일 작성 및 프로그램 일지정리</li> </ul>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전문직 (돌봄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돌봄업무 전담</li> </ul>
	피해 장애인 쉼터	전문직 (생활지도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자립지원서비스 제공</li> <li>· 기타행정업무</li> </ul>
	종합재가 센터	전문직 (요양보호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 업무 담당</li> </ul>
		전문직 (요양보호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평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 업무 담당</li> </ul>
	동구 브리즈힐 어린이집	전문직 (보육교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및 행정 전반</li> </ul>
		전문직 (조리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li> </ul>

※ 분야별 모집 예정이나 「세부 업무분장」은 변경 가능

※ 분야별 모집 예정이나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 채용기준

### 가. 전문직 채용

#### ○ 자격요건(공통사항)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단, 재단 인사규정 제36조(정년)에 따라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및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국가유공자법)

#### ○ 자격요건(세부사항)

구분	분야	직급	자격기준
전문직	미추홀 푸르내	전문직 (생활 지도원)	· 사회복지사(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전문직 (돌봄 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피해 장애인 쉼터	전문직 (생활 지도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종합재가 센터	전문직 (요양 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전문직 (요양 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동구 브리즈힐 어린이집	전문직 (보육 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직 (조리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

### 3. 결격사유

#### 가. 공통사항

<p><b>「재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li> <li>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li> <li>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li> <li>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li> <li>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li> <li>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li> <li>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ol>
--

#### 나. 개별사항

전문직	<p>피해 장애 인습 터, 미추 흘푸 르내</p> <p>생활 지도 원</p> <p><b>「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b>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li> </ol>
	<p>종합 재가</p> <p>요양 보호 사</p> <p><b>「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li> <li>3. 피성년후견인</li> <li>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li> <li>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li> <li>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 </ol>

<p>어린이집</p>	<p>보육교사</p>	<p>「영유아보육법」 제1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li> <li>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li> <li>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ol>
<p>다함께돌봄센터</p>	<p>돌봄교사</p>	<p>「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로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p> <p>「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li> </ol>

#### 4. 시험방법

전형단계	내용 및 기준	비고	선발인원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li> <li>* <b>단, 6배수 초과 시 입사지원서 정량/정성평가로 선발 가능</b></li> </ul>	적부판단	요건 충족자
면접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면접(50%) + 경험면접(50%)</li> </ul>		1배수 이내

# 1.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 적부판단: 응시자의 “응시원서” 와 분야별 직위에 따른 자격기준에 맞는지 적부를 판단
- 정량/정성평가 심사위원은 채용분야의 업무 또는 인사(채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 및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선정
  - 구성(3명):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 \* 단, 장애인활동지원사는 2배수 초과 시, 그 외는 6배수 초과 시 입사지원서 정량/정성평가로 선발 가능

##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시험방식]: 인성면접 및 경험면접 진행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채점
- 합격자결정은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의 합계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심사위원은 채용분야의 업무 또는 인사(채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 및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선정
  - 구성(3명):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 5. 시험시행 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7. 13.(화) ~ 2021. 7. 19.(월) 18:00까지
- 접수처: 우편 및 이메일 접수([insa@incheon.pass.or.kr](mailto:insa@incheon.pass.or.kr))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3층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사담당자 앞
  - ※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7.19.(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인사담당자(032-721-6975)에게 수신여부 확인 요망

## 나. 채용일정

전형 단계	전형 일정	비고
서류심사	'21.7.20.(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1.7.20.(화)	재단 홈페이지 공고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21.7.22.(목)	
면접시험	'21.7.27.(화)	
면접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21.7.27.(화)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용서류 접수 확인, 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21.8월 중	
신규임용 발령장 수여	'21.8월 중	

※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야별 모집예정이나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6. 제출서류

###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 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상의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양식에 따라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 가. 서류접수 시

- 1) 응시원서 1부
- 2) 자기소개서 1부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공통) 해당 양식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뒤 작성,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나. 면접시험 시(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함)

- 1) (공통)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 1부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3)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1부
  -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확인용이므로 근무 경력 사업장이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4) (해당자만) 자격증명서(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1부
- 5) (해당자만) 취업지원대상자 증빙관련 서류 1부

## 7. 근무 및 보수수준

구분	분야	직급	근무 및 보수수준			
전문직	미추홀푸르내	전문직 (생활지도원)	고용형태	정규직	※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교대근무)		
			급여조건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준함		
			근무지	(미추홀 푸르내) 미추홀구 석바위로 107(주안동)		
	서구다함께돌봄센터	전문직 (돌봄교사)	고용형태	정규직	※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조건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인건비 기준 (월 1,858천원)에 따름		
			근무지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49, 루원시티루에블리 내)		
	피해장애인쉼터	전문직 (생활지도원)	고용형태	정규직	※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교대근무)		
			급여조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인건비 기준에 따름		
			근무지	인천광역시(비공개 시설)		
	강화종합재가센터	전문직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정규직	※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른 시간제 근무		
			급여조건	월 40시간 보장,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에 준함 ※ 추후 운영 안정화 시, 월급제 전환		
			근무지	(강화 종합재가센터)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 (3F)		
	부평종합재가센터	전문직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정규직	※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른 시간제 근무		
			급여조건	월 40시간 보장,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에 준함 ※ 추후 운영 안정화 시, 월급제 전환		
			근무지	(부평 종합재가센터) 부평구 청천동 마장로 410번길 6 (3F)		
동구브리즈힐어린이집	전문직 (보육교사)	고용형태	정규직	※ <b>신규 어린이집으로 임용시기는 2021년 8월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b> ※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조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기준에 따름			
		근무지	브리즈힐 어린이집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162번길 9)			

전문직 (조리원)	고용형태	정규직	※ 신규 어린이집으로 임용시기는 2021년 8월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조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기준에 따름	
	근무지	브리즈힐 어린이집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162번길 9)	

※ 기타조건: 상기조건 이외의 사항은 재단 규정에 따름

## 8. 지원자 주의사항

###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채용 담당자에게 감염사실 혹은 격리자임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면접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부터 시험실 입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사장 입구에서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 (해외이동여부, 국내확진자 발생 루트 이동사항, 코로나 관련 의심증상 확인)
  - 감염의심 응시자 시험진행: (응시자 희망시)면접전형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 감염의심자 이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용구급차를 통해 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전용구급차 지원 불가 시 119에 연락하여 전용구급차로 이송
- ※ 코로나19관련 전용구급차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선별진료소 이송 불가
- 시험중에도 마스크 착용은 가능하며, 감독관이 응시자 확인 시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관련 채용비리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입사 이후에도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처리 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제출 및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5일 이내 본인이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위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분야 및 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 면접시험은 전문지식 능력과 응용능력, 창의력, 개인의 잠재능력·품성 등을 중시하는 질문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 최초 채용에서 응시자 수가 모집인원의 1배수 이하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1배수 이하일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위(次)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재단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032-721-6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